

의안번호	2202949
의 퇴 인	박주민 의원
회 답 일	2024. 10. 30.
추 계 번호	24D296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조약체결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두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7,400만원(연평균 2억 3,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조약체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72	72	72	72	72	360	72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60	60	60	60	60	300	60
공청회 개최(안 제11조)	99	101	102	104	107	514	102
합 계	231	233	234	236	239	1,174	235

-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조약체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및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은 민간위원 수 및 회의개최횟수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안 제11조)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 건수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조약체결심의위원회)	조약에 관한 조약체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분야별자문위원회)	조약위원회에 조약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함	재량규정

3	안 제11조(공청회 개최)	외교부장관은 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재량규정 의무규정(단서)
4	안 제22조(조약의 이행평가)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조약체결심의위원회)	○	
2	안 제8조(분야별자문위원회)	○	
3	안 제11조(공청회 개최)	○	
4	안 제22조(조약의 이행평가)	×	외교부장관이 체결·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약의 수 및 각 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조약체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과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공청회 개최(안 제11조)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 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조약체결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제정안은 조약체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이하 “조약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각부의 장관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조약위원회를 3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19인)을 제외한 10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조약체결 건수(43건)²⁾를 고려하여 조약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 및 위원회 참석비,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가정
- 추계결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2024년 10월 경제전망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2.0

2) [참고자료] 연도별 조약 체결 현황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2] 조약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조약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72	72	72	72	72	360	72

주: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 제정안은 조약위원회에 조약의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외교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자문위원회를 5개 분야별로 10인씩 총 50인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각 1회 개최하며 자문위원회 의수당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조약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	60	60	60	60	60	300	60

주: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공청회 개최(안 제11조)

- 제정안은 외교부장관이 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⁴⁾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함에 따라 추가재정소

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향후 공청회 개최 대상이 되는 조약의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진 연평균 조약체결 건수(9건)를 적용함
- 공청회 개최비용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IPEF⁵⁾ 공급망 협정」 공청회 개최 비용(1,0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 결과,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억 1,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공청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공청회 개최(안 제11조)	99	101	102	104	107	514	102

주: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조약체결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두며,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7,400만원(연평균 2억 3,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5)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조약체결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72	72	72	72	72	360	72
분야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60	60	60	60	60	300	60
공청회 개최(안 제11조)	99	101	102	104	107	514	102
합 계	231	233	234	236	239	1,174	235

주: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연도별 조약 체결 현황(2024.9.30.기준)⁶⁾

연 도	계	비준동의 필요			비준동의 불요		
		소 계	양 자	다 자	소 계	양 자	다 자
1948~ 1995	1,599	374	234	140	1,225	1,000	225
1996	69	11	7	4	58	37	21
1997	88	11	8	3	77	66	11
1998	49	7	4	3	42	32	10
1999	48	12	9	3	36	28	8
2000	74	13	10	3	61	49	12
2001	70	12	6	6	58	48	10
2002	61	9	9	0	52	35	17
2003	59	12	8	4	47	39	8
2004	86	11	7	4	75	55	20
2005	90	21	14	7	69	57	12
2006	110	17	14	3	93	77	16
2007	99	23	14	9	76	67	9
2008	84	13	11	2	71	60	11
2009	80	9	7	2	71	56	15
2010	81	18	12	6	63	53	10
2011	65	7	4	3	58	50	8
2012	77	14	12	2	63	48	15
2013	81	18	16	2	63	59	4
2014	77	12	9	3	65	58	7
2015	83	22	14	8	61	56	5
2016	71	22	18	4	49	39	10
2017	51	11	10	1	40	29	11
2018	39	10	8	2	29	21	8
2019	59	12	11	1	47	40	7
2020	27	5	4	1	22	18	4
2021	42	13	13	0	29	23	6
2022	51	7	3	4	44	41	3
2023	36	7	4	3	29	23	6
2024.9.30.	44	6	4	2	38	35	3
총 계	3,550	739	504	235	2,811	2,299	512

6) 외교부 조약과 제출자료